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1월 20일(목) 조간 (1.19.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2. 1. 19. (총 6매)	담당부서	기초연금과
과 장	송 명 준	전 화	044-202-3670
담 당 자	이 재 혁		044-202-3672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1년	2022년
기준연금액	200,000원	202,600원	204,010원	206,050원	250,000원	300,000원	307,500원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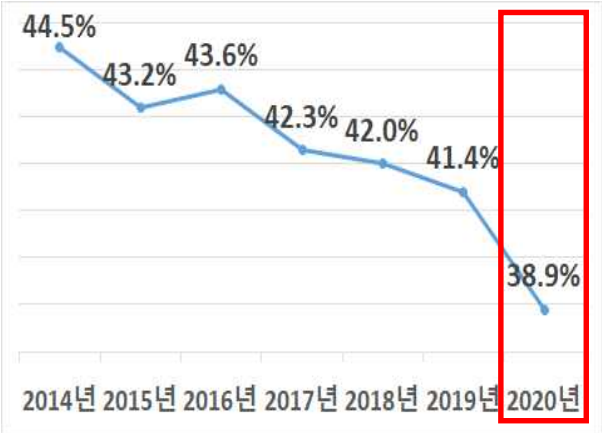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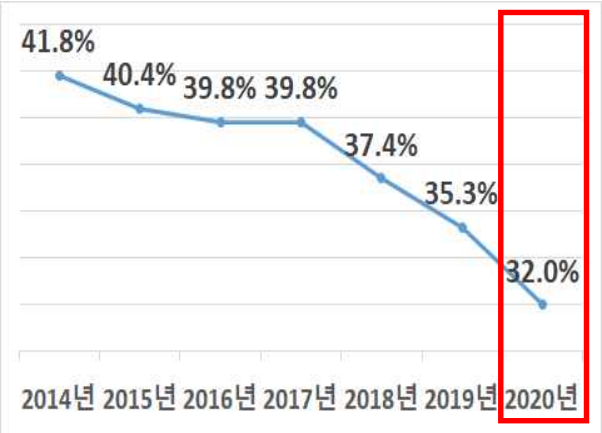

○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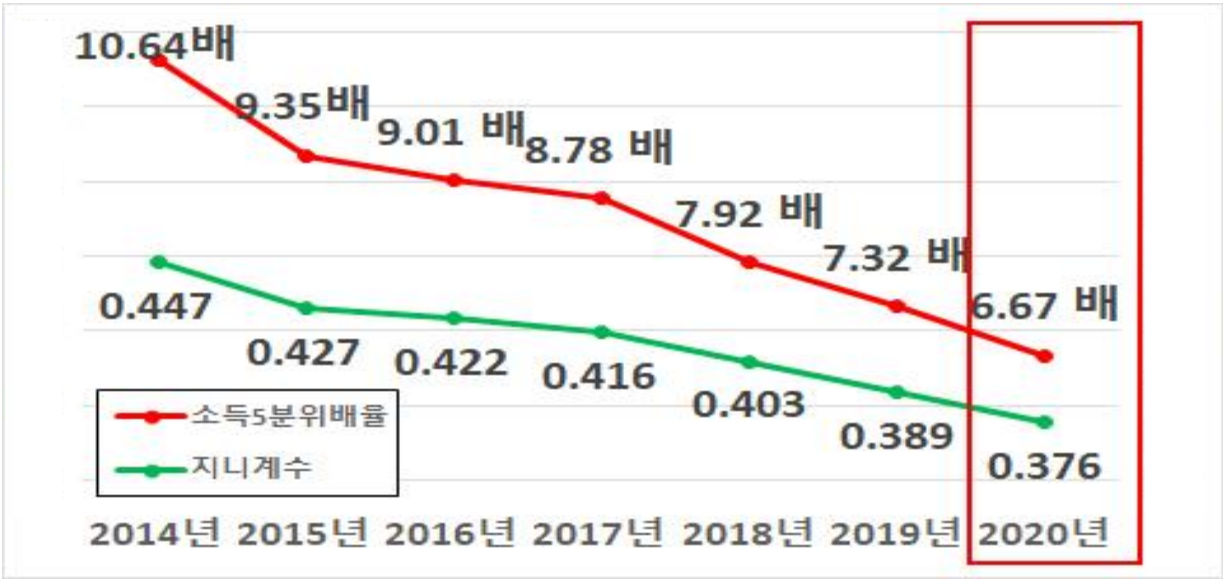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11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가구 소득, 자산 등 재무 상태를 통해 실질적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참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참 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가구	131만 원	137만 원	148만 원	169만 원	**180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219.2만 원	236.8만 원	270.4만 원	**288만 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 명, 조원)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예산		
			계	국비	지방비
2014	652	435	6.9	5.2	1.7
2015	677	450	10	7.6	2.4
2016	699	458	10.3	7.9	2.4
2017	735	487	10.6	8.1	2.5
2018	764	513	11.8	9.1	2.7
2019	801	535	14.7	11.5	3.2
2020	848	566	16.8	13.2	3.6
2021(10월 말)**	878	595	18.8	14.9	3.9
2022(예상치)	898	628	20.0	16.1	3.9

* 2014~2020년은 12월 말 기준

** 2021년은 10월 말 기준 실적치, 2022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 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